#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95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조승래・이정문・천준호

한준호 • 이기헌 • 진선미

장철민 · 장종태 · 박정현

박용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 중 1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8조(대한민국6 · 25참전유공자 제18조(대한민국6 · 25참전유공자 회의 설립) ① 6 · 25전쟁 참전 회의 설립) ① 6 · 25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신을 기리고 회원-----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6 · 25참전유공자회(이하 "6 · 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 제19조(회원의 자격) -------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 른 6 · 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 중 1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인-----각각 6 · 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른 대 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 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 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